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2076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326,287,9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6,287,92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 대표자 B과 ① 2012. 3. 19. 보증금액 9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3. 19.까지(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21. 3. 12.까지 연장되었다),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대출예정금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② 2015. 3. 27. 보증금액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25.까지(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21. 3. 19.까지 연장되었다), 채권자 D은행,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③ 2016. 11. 14. 보증금액 1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11. 14.까지(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20. 11. 13.까지 연장되었다), 채권자 D은행,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④ 2019. 4. 19. 보증금액 2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2. 4. 19.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① 2013. 7. 10. 보증금액 93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7. 10.까지(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20. 7. 3.까지 연장되었다),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대출예정금액 1,1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E 대표이사 B에게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② 2014. 10. 17. 보증금액 23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10. 16.까지(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20. 10. 8.까지 연장되었다), 채권자 D은행, 대출예정금액 2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E 대표이사 B에게 기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시 B은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신용보증계약 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1) B은 ① 2012. 3. 21. 위 2012. 3. 19.자 기보보증서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이율 3.32%, 변제기 2013. 3. 19.까지(이후 변제기가 2021. 3. 12.까지 연장되었다)로 하여 1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5. 3. 30. 위 2015. 3. 27.자 기보보증서를 제공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이율 5.93%, 변제기 2016. 3. 25.까지(이후 변제기가 2021. 3. 19.까지 연장되었다)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6. 11. 16. 위 2016. 11. 14.자 기보보증서를 제공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이율 5.51%, 변제기 2017. 11. 14.까지(이후 변제기가 2020. 11. 13.까지 연장되었다)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④ 2019. 5. 7. 위 2019. 4. 19.자 기보보증서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이율 3.156%, 변제기 2022. 4. 19.까지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E은 ① 2013. 7. 11. 위 2013. 7. 10.자 기보보증서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이율 3.301%, 변제기 2014. 7. 10.까지(이후 변제기가 2020. 7. 3.까지 연장되었다)로 하여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4. 10. 17. 위 2014. 10. 17.자 기보보증서를 제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이율 5.66%, 변제기 2015. 10. 16.까지(이후 변제기가 2020. 10. 8.까지 연장되었다)로 하여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B은 2020.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9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0,000,000원, 잔금 92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하였다(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B은 202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3. 25. 접수 제1329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신용사고의 발생

1) B은 2020. 4.경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위 2012. 3. 21.자 및 2019. 5. 7.자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계약 및 2015. 3. 30.자 및 2016. 11. 16.자 D은행과의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20. 4. 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총 채권액 중 보증 잔액이 293,500,000원(= 93,500,000원 + 200,000,000원)이라는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D은행은 2020. 4. 7.경 원고에게 B의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총 채권액 중 보증잔액이 합계 275,000,000원(= 190,000,000원 + 85,000,000원)이라는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2) E은 대표이사인 B이 위 1)과 같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위 2013. 7. 11.자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계약 및 2014. 10. 17.자 D은행과의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D은행은 2020. 4.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총 채권액 중 보증 잔액이 229,500,000원이라는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중소기업은행은 2020. 4. 10.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총 채권액 중 보증 잔액이 935,000,000원이라는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20. 7. 15. 중소기업은행에 B의 신용보증원금 293,5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0. 3. 7.부터 2020. 7. 14.까지의 이자 3,293,663원, 총 296,793,6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D은행에 B의 신용보증원금 275,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0. 3. 19.부터 2020. 7. 14.까지의 이자 5,094,292원, 총 280,094,2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20. 7. 27. 중소기업은행에 E의 신용보증원금 935,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0. 3. 5.부터 2020. 7. 26.까지의 이자 12,143,350원, 총 947,143,3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D은행에 E의 신용보증원금 229,500,000원 및 그에 대한 2020. 3. 17.부터 2020. 7. 26.까지의 이자 4,684,809원, 총 234,184,8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 합계 7,063,084,810원이 적극재산 1,467,296,798원을 초과하여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시의 시가 1,028,19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701,902,077원을 제외한 326,287,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공장을 이전할 생각으로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합계 99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B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C 대표자 B과 2012. 3.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이 2012. 3.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5. 3. 2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이 2015. 3. 30. D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6. 11. 1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이 2016. 11. 16. D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9. 4.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이 2019. 5.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원고가 E과 2013. 7. 1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E이 2013. 7.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4. 10. 1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E이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B이 2020. 2. 18.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B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B 및 E의 중소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중소기업은행 및 D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각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20. 7. 15. 중소기업은행에 총 296,793,663원, D은행에 총 280,094,292원을

대위변제하고, 2020. 7. 27. 중소기업은행에 총 947,143,350원, D은행에 총 234,184,80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4, 17, 19,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2. 18.에 원고는 B 및 E과 이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20. 7. 15. 및 2020. 7. 27.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

② B은 C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E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이 원고와 체결하거나 연대보증한 각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계약 체결 이후 3차례 내지 6차례에 걸쳐 보증기한이 연장되었고, 이는 B이 C의 대표자 또는 E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은행 또는 D은행에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B은 2020. 4.경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B의 개인사업체인 C 및 E의 영업 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이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사업장이라는 점,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2. 18. E의 사업장인 부동산도 F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E의 사업장을 매도한 이후에는 C 및 E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2.경 B은 C 및 E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경영난 악화의 극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이 있게 되자 G 주식회사가 E에 대한 가스대금채권을, H 주식회사가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한국전력공사가 E에 대한 전기요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 부동산에 각 가압류가 마쳐졌는데 이 또한 E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금액에 비추어 E은 2020. 2.경에도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B이 중소기업은행 또는 D은행에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신용보증사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③ 실제로 B과 E은 중소기업은행 및 D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B의 어음 거래정지 처분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후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296,793,663원 및 947,143,350원, D은행에 280,094,292원 및 234,184,8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추론한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인 2020. 2. 18.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0. 7. 15. 및 2020. 7. 27. 원고의 대위변제로써 발생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다. 만약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고, 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16, 25호증의 각 기재, IBK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장의 이 법원에 대한 2020. 12. 8.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기계 기구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2016. 9. 29.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 2017. 9. 21.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3. 25.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마쳐진 위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2. 18.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이 B에 대하여 합계 1,611,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 2020. 3. 1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기계 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014,605,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997,568,000원 + 기계 기구의 평가액 17,03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근접한 2020. 3. 1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기계 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014,605,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시인 2020. 2. 18. 기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기계 기구의 가액도 위 1,014,605,000원으로 볼 것인 점, ②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위 각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기계 기구를 함께 담보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기계 기구의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할 것인 점, ③ 중소기업은행이 B에 대하여 보유하는 합계 1,611,000,000원의 대출금 채권 중 위 2016. 6. 29. 및 2017. 9. 21.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 발생한 대출금 채권은 2012. 3. 21. 대출이 이루어진 1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000,000원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 기구의 가액이 비례하여 산정하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부분은 $1,475,795,573\text{원} (= 1,501,000,000\text{원} \times (997,568,000\text{원} \div 1,014,605,000\text{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같은 논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040,000,000원(= 240,000,000원 + 800,000,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1,022,536,573\text{원} (= 1,040,000,000\text{원} \times (997,568,000\text{원} \div 1,014,605,000\text{원}))$ 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채권최고액 1,022,536,57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997,568,000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중소기업은행이 위 1,022,536,573원을 초과하는 1,475,795,573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B에 대하여 보유한 저당권은 근저당권으로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채무도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교환가치의 전부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민석, 판사 이호선, 판사 정주희

별지